

[한국교원대학교 등록금 반환 처리 지침]

제정 2019. 2. 12.

개정 2021. 9. 7.

개정 2023. 6. 29.

개정 2023. 11. 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제80조에서 규정한 등록금 반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한국교원대학교 등록 학생(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대체 과정 포함) 중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등록금 반환) ① 「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제80조에 따라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다만 분할 납부자가 완납 전에 자퇴나 제적 시에는 납부한 금액이 아닌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 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할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다만,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학생의 반환신청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고,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한다.

②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받은 학생은 그 사유에 관계없이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③ 당해 학기개시일은 「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제30조의 학년, 학기를 따르며, 반환 사유 발생일별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은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2.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3.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5.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원 및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계절제 전공의 등록금 반환은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 11. 15.]

제4조(반환기준일) 학적 변동에 따라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등록금 반환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 중인 자가 자퇴한 경우 : 자퇴 신청일

1의2. 재학 중인 자가 사망 제적된 경우 : 사망일

2. 휴학 중인 자가 자퇴한 경우 : 휴학 신청일(복학 없이 연속된 휴학의 경우에는 최초 휴학신청일로 한다. 이하 같다.)

2의2. 휴학 중인 자가 미 복학·사망 제적된 경우 : 휴학 신청일

제5조(등록금 반환신청 및 절차)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교원대학교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퇴의 경우에는 한국교원대학교 청람포털서비스 통합학사시스템에 자퇴 신청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1. 등록금 반환신청서 1부 (재무과 비치, 홈페이지 게시)

2. 반환에 따른 증빙서류 1부

3.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 1부 (보호자일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6조(처리기한) 등록금 반환 금액은 학적변동 허가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반환금의 계산)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부 칙 (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대학원 등록금 반환기준의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휴학을 허가받은 교육대학원생이 등록금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4항 별표 개정지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 (2023. 11.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붙임3-별표]

**교육대학원 및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계절제 전공
등록금의 반환기준(제3조제4항 관련)**

1. 해당 학기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액 |
|-------------------------------------|-------------------------|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출석수업일 1/2선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출석수업일 1/2선 지난 날부터 3/4선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출석수업일 3/4선 초과 | 반환하지 아니함 |

※ 출석수업일: 매학기 교육대학원 및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계절제 전공 출석수업 기간(학사력)